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표

(2021년 4월 1일 기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	규모	시·군·구
※	※	※	※	※

※ 이 항목은 지방관서에서 기재합니다.

- ➡ 이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승인받은 지정통계(제118005호)로서, 동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 이 조사는 사업체의 구인인원 및 부족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정부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구인인원 및 부족인력 등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인력관리책임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체 현황

사업체 명칭	
사업체 소재지	
경 영 형 태	☐ 1 일반 사업체 ☐ 2 파견사업체 ☐ 3 용역(도급)업체 ☐ 4 기타
사업체 형태	☐ 1 단독 사업체 ☐ 2 본사본점 등 ☐ 3 공장·지사(점), 영업소 등 ☐ 4 기타
주요 생산품명/영업종목	1. 2. 3.

2 종사자 현황 (2021년 4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

구 분	현 원						
	전체 종사자수 (A+B)	내국인			외국인 ³⁾		
		계(A)	상용 ¹⁾	기타 ²⁾	계(B)	상용 ¹⁾	기타 ²⁾
계							
남							
여							

응답자 / 책임자 확인	응답자		책임자 확인
	근무부서		
	전화번호		
	팩스(fax)		
	직책		
	성명		

응답자 이메일 주소

비고 (종사자 수 변동 사유 등 특이사항 기재)

조 사 원※	조사관리자※

- 주** 1)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 고용계약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체의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은 포함
 2) **기타**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 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받는 자 또는 기타 그 외 종사자
 3) **외국인**은 합법 또는 불법 모두 포함
 4)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받은 자는 제외(파견·용역업체인 경우 외부에 파견한 근로자는 포함)

현원⁵⁾, 부족인원⁶⁾ 및 채용계획인원⁷⁾ 작성 예시

주 5) '현원'은 2021년 4월 1일 현재 직무내용별 종사자수를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이 없어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분류코드는 한국고용직업분류표 7~8페이지 참고)

 '현원'은 조사표 1페이지의 '2.종사자 현황'의 '현원'에 대하여 직무내용별로 작성합니다.

* 사업체의 종사자 현원이 30명(외국인 포함)일 경우, 각각 직무내용별로 현원을 작성합니다.

6) '부족인원'은 2021년 4월 1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인원이 없으면 공란으로 남겨두지 말고 "없음"으로 기재)

7) '채용계획인원'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6개월) 사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계획인원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illegible]

※ 직무내용의 []는 7~8페이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직업명칭임.

현원⁵⁾, 부족인원⁶⁾ 및 채용계획인원⁷⁾

주 5) '현원'은 2021년 4월 1일 현재 직무내용별 종사자수를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이 없어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분류코드는 한국고용직업분류표 7~8페이지 참고)

6) '부족인원'은 2021년 4월 1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인원이 없으면 공란으로 남겨두지 말고 "없음"으로 기재)

7) ‘채용계획인원’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6개월) 사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계획인원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illegible]

4 구인인원⁸⁾ 및 채용인원⁹⁾ 작성 예시

4-1. 구인인원(2021년 1월 1일~3월 31일 사이의 채용을 위한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2021년 1월 1일~3월 31일 사이에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한 인원)

연 번	직업 분류코드	직무내용	구 인 인 원 ⁸⁾				채 용 인 원 ⁹⁾				미충원 인원 ¹⁰⁾ (G=C-F)	미충원 사유 ¹¹⁾
			직능수준 ¹²⁾	내국인		외국인	직능수준 ¹²⁾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구인인원 (C=A+B)	상용(A)			기타(B)	내국인 채용인원 (F=D+E)		상용(D)	
1	0 2 6 1	기획·마케팅 사무원	1수준				1수준				0	
			2-1수준	2	1	1	2-1수준	2	1	1	0	
			2-2수준	2	2		2-2수준	1	1		1	5
			3수준	4	4		3수준	2	2		2	3
			4수준				4수준				0	

- 주 8)** '구인인원'은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통하여 구인한 인원으로 위의 채용인원⁹⁾(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한 인원)을 위해, 최초 모집공고 당시에 채용하려고 했던 인원을 기재합니다.(2021.1.1.~3.31.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한 인원이 0명이더라도, 이를 위한 구인이 있었으면 구인인원 기재)
* 대외적인 구인활동: 홈페이지 모집공고, 신문 등에 채용공고를 낸 경우, 고용센터에 구인요청, 친지 등에게 소개를 요청한 경우 등

▶ 구인인원에 포함되는 경우	- 모집기간과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한 기간이 모두 '21.1.1.~'21.3.31.인 경우 -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한 기간이 '21.1.1.~'21.3.31. 내에 이루어진 경우, 모집기간이 '21.1.1. 이전이라도 구인인원에 포함 * 예: '21.1.10. 10명을 채용했고 이를 위한 모집기간 '20.12.10.~12.24.에 15명을 구인한 경우, 구인인원은 15명, 채용인원은 10명으로 기재 * 예: '21.1.10.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한 인원이 0명이더라도 '20.12.10.~12.24.에 15명을 구인한 경우, 구인인원은 15명, 채용인원은 0명으로 기재
▶ 구인인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한 기간이 '21.1.1.~'21.3.31. 이후인 경우는 모집기간이 '21.1.1.~'21.3.31. 이내라도 구인인원에서 제외 * 예: '21.4.5. 합격자 10명을 최종 확정한 경우, 이를 위한 모집기간 '21.2.20.~3.15.에 15명을 구인했다라도 구인인원과 채용인원 모두 0명으로 기재

- 9) '채용인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최종적으로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 예시: 신문에 50명의 신규채용 공고를 내서 응시자 중 20명만 채용하기로 최종 확정된 경우 채용인원에 20명 기재

- 10) '미충원인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인원에서 채용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미충원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

- 11) '미충원사유'는 내국인에 대한 미충원인원이 있는 경우에만 다음 항목 중 주된 사유 1개를 기재합니다.

①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	②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	③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④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⑤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⑥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⑦ 통근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	⑧ 기타

- 12) '직능수준'은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 또는 채용한 인력의 직무능력을 의미하며 다음에서 정한 경력, 자격증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을 선택하여 기재하되, 요구되는 능력이 2개 이상의 수준에 걸쳐 있는 경우(예: 요구되는 수준이 경력은 10년 이상(4수준), 자격증은 기사수준(3수준)인 경우)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선택(예: 앞의 경우에는 4수준 선택)합니다.

☞ 경력과 자격증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조지표로 학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 분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2-1 수준	2-2 수준		
경 력	현장 경력 없어도 됨	1년 미만의 현장경력 필요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 필요	2년~10년 미만의 현장경력 필요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필요
자 격 증	자격증 취득 수준을 요하지 않음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 (이에 준하는) 수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산업기사 (이에 준하는) 수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이에 준하는) 수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이에 준하는) 수준
[보조]학력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고졸 수준의 업무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박사 수준의 업무

4-1. 구인인원(2021년 1월 1일~3월 31일 사이의 채용을 위한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2021년 1월 1일~3월 31일 사이에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한 인원)

연 번	직업 분류코드	직 무 내 용	구 인 인 원 ⁸⁾					채 용 인 원 ⁹⁾					미충원 인원 ¹⁰⁾ (G=C-F) (내국인)	미충원 사유 ¹¹⁾ (내국인)
			직능수준 ¹²⁾	내국인		외국인	직능수준 ¹²⁾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구인인원 (C=A+B)	상용 (A) 기타 (B)			내국인 채용인원 (F=D+E)	상용(D) 기타(E)					
			1수준					1수준						
			2-1수준					2-1수준						
			2-2수준					2-2수준						
			3수준					3수준						
			4수준					4수준						
			1수준					1수준						
			2-1수준					2-1수준						
			2-2수준					2-2수준						
			3수준					3수준						
			4수준					4수준						
			1수준					1수준						
			2-1수준					2-1수준						
			2-2수준					2-2수준						
			3수준					3수준						
			4수준					4수준						
			1수준					1수준						
			2-1수준					2-1수준						
			2-2수준					2-2수준						
			3수준					3수준						
			4수준					4수준						

4-2. 구인경로¹³⁾

주 13) '구인경로'는 '4-1.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에서 내국인(외국인은 제외) 구인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인원은 없고 외국인 구인인원만 있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 아래 보기 중 구인을 위하여 활용한 것을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예	아니오
①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 및 공공직업정보사이트(워크넷, 자치단체 일자리포털 등)	☐	☐
② 민간 취업 알선기관 및 민간 직업정보사이트(유·무료 포함)	☐	☐
③ 대중매체(신문, 잡지, 방송, 생활정보지 등)	☐	☐
④ 학교, 학원 등의 추천	☐	☐
⑤ 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소개	☐	☐
⑥ 자사 홈페이지	☐	☐
⑦ 기타(기타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 내용을 기재) (_____)	☐	☐

5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인원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1~3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① 채용비용 증액 또는 구인방법의 다양화 | ② 외국인력 활용 | ③ 파견 및 용역근로자 활용 |
| ④ 임금(급여)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 ⑤ 재직자의 근로시간(연장 및 휴일근로)확대 | ⑥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부족한 직무능력 향상 |
| ⑦ 생산설비 자동화 또는 사무자동화 추진 | ⑧ 일과 가사를 병행하려는 인력 활용(시간제 등) | |
| ⑨ 기타(_____) | | |

★소중한 자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